

2023년도 출자·출연 (변경)동의안

의안 번호	122
----------	-----

제안연월일 : 2023. 5.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 출연개요

(단위: 천원)

순번	출연기관	출연금			주요사항
		계 (A+B)	당초 (A)	1회추경 (B)	
계	2개	1,943,613	928,495	1,015,118	
1	평창유산재단	943,613	428,495	515,118	○재단법인 평창도시재단 해산으로 일부사업이 평창유산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추가 출연
2	평창푸드통합 지원센터	1,000,000	500,000	500,000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추가 출연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출연

주관부서	올림픽체육과	1회추경 출연예상액	515,118천원
------	--------	---------------	-----------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이사장 심재국)
- 일반현황
 - 법인등기 : '21. 8. 30.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9-27
- 조직
 - 이사회 : 12명(이사장, 이사 9, 감사 2)
 - 사무국 : 7명(사무처장, 기획팀 3, 사업운영팀 3)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3년 출연금액 : 515,118천원(2023년 당초 출연금 428,495천원)
- 주요사업 내용
 -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동계올림픽 유·무형자산 활용유산사업, MICE사업 유치 및 발굴, 올림픽도시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주민참여 유산사업발굴
 - 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체험 지원(찾아가는 공연·전시·시네마 등)
 - K-POP 아카데미·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운영

□ 출연 필요성

- 재단법인 평창도시재단 해산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으로 운영체계 확대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
- 재단법인 평창문화도시재단 해산으로 일부사업이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술인지원 및 청소년 문화교육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올림픽유산사업 발굴로 2024 평창 청소년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동계스포츠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통해 지역 내 동계스포츠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 근거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산출내역

- 출연금 : 515,118천원

- 인건비 55,825천원

- 임기제(6급상당) 52,811,000원×1명×1/2(6월) : 26,406
- 임기제(9급상당) 35,027,000원×1명×1/2(6월) : 17,514
- 제수당(정액급식비,연차수당,시간외수당) 및 퇴직급여 : 11,905

○ 물건비 14,293천원

- 사무관리비 1,200
- 국내여비 3,600(관내 2,400/ 관외 1,200)
- 직급보조비 2,160, 복리후생비(4대 보험 등) 6,213
- 교육훈련비 600, 관서업무비 520

○ 사업비 : 445,000천원

-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100,000
-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60,000
- 평창청소년 K-POP 아카데미 운영 85,000
-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 프로그램 운영 200,000

□ 출연 기대효과

-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본격화
- 관내 문화예술인 지원 및 청소년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청소년 문화사업의 운영으로 지역 문화교육 활성화
- 올림픽 개최도시 레거시 가치 전파 및 동계스포츠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부금 등

□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주관부서	농산물유통과	1회추경 출연예상액	500,000천원
------	--------	---------------	-----------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김영균)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21. 8. 2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220
 - 조직 : 이사회 9명(이사장 1, 이사 6, 감사 2)
 - 운영인력 : 1실 4팀 28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2023년 출연예정금액 : 1,000,000천원

합계(천원)	당초예산(기정)	제1회 추경	증감액	비고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 주요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22년 매출액 (백만원)	비고 (수수료)
합계		14,630	
학교급식사업	관내 유·초·중·고 학교급식	2,937	0%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686	10~20%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성필립보 농산물 납품 및 유튜브 주말장마당	338	5%

대형소비처 농산물 위탁 판매	강원농협연합-대관령원에농협 농산물(배추) 위탁 판매	6,852	0.3~0.5%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경기도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	187	5%
한약재유통지원센터 시설 운영	당귀, 일천궁 계약재배, 선별·검수·가공·유통	3,630	1%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 (배송, 품질관리, 사후관리 등)	-	2023 신규사업
잡곡가공센터 운영	잡곡 전처리 및 가공, 시설관리	-	2023 신규사업

□ 출연 필요성

-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기획생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제 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출연시 기대효과

-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조기 정착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기여
- 관내 중소가족농, 고령농, 귀농·귀촌 농업인의 기초소득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